

모델 09

수리(개조) 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 (한-미 FTA)

01 |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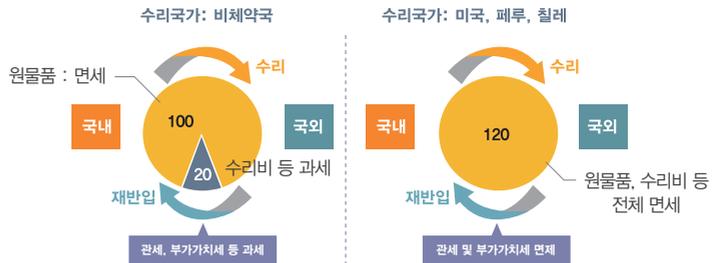
- 수리(개조)물품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관세 등이 부과되는 FTA 비체약상대국에서 수행되던 수리(개조)를 이들 조세가 면제되는 체약상대국으로 이전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세 절감효과 향유 모델

02 | 비즈니스 모델

- 수리 또는 개조를 거쳐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등을 해당 조세가 면제되는 FTA 협정을 활용하여 수리 또는 개조를 진행한 후 무세로 재수입함으로써 조세 절감효과 발생

한-미 FTA, 한-페루 FTA, 한-칠레 FTA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거쳐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 물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가치증가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 (FTA관세특례법 제8조제1항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,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,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, 제56조제16호)

수리(개조) 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



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수리·개조 후 재수입하는 물품
- (협정) 한-미 FTA, 한-페루 FTA, 한-칠레 FTA